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66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필요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분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
- 성장 가능성 있는 기후테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 조성 필요

※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추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계			805	9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지인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가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쿨리지코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市 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 설립 출자금 납입('23.12.1.) - 기업발굴 및 투자 진행 중	
6호		8년 내외	200 이상	20 (市 기후대응기금)	- 투자운용사 선정 중('24.8.)	

□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 추진 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市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 초기 벤처·창업기업 생존 및 성장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 출자 금액 및 재원: 20억원, 기후대응기금
-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드 명: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200억원(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서울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100% 이상
 - ※ 투자대상은 펀드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나. 예산조치: 2025년 기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출자동의안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테크 혁신 기업 발굴, 서울의 미래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기후대응기금(20억원)을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에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그간 총 6차례에 걸쳐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금번 7회차부터는 ‘기후테크 펀드’로 명칭을 변경, 시 예산 2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할 계획임.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총괄 현황('24년 8월 기준)〉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존속 기간	市 투자 회수금	녹색기업 투자현황	
					기업수	투자액
녹색1호 (청산완료)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 출연금 출자)	160억원 (SBA 20억원)	'11.5.~ '18.5.	24.5억원 (SBA)	5	40억원
녹색2호 (청산완료)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 출연금 출자)	100억원 (SBA 20억원)	'12.7.~ '20.7.	37억원 (SBA)	4	20.5억원
녹색3호 (청산중)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 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 민간위탁 관리)	200억원 (市 20억원)	'13.9.~ '24.9.*	21.6억원 (서울시)	3	45억원
녹색4호 (회수중)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 출자)	145억원 (SBA 10억원)	'17.9.~	3.04 (SBA 진행중)	3	22.5억원
녹색5호	씨씨브이씨 ESG 팩트펀드 VI (녹색3호 회수금 재출자)	200억원 (市 20억원)		- 설립출자금 납입('23.12.1.) - 기업발굴 및 투자 진행 중		
녹색6호	디쓰리 미래환경 벤처투자조합 (우선협상자 선정완료, 규약 검토 중)	시의회 출자 동의안 제출('23. 11.)				
총 계		805억원 (市SBA 90억원)			15	128억원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나. 검토의견

1) 관련 법령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공공기관에 대해 출자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1항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기후대응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는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제5호2)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녹색 펀드 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2)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1~6호) 현황

- 녹색 펀드는 금융권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에 부담이 있는 서울시 소재 녹색 중소기업 중에서 담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 기술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이는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³⁾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 출연금, 중소기업청, 민간투자자 등의 출자금으로 조성되어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2) 「탄소중립 기본법」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 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3)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176호, '11.9.9.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24년 기준)〉

(단위: 억원)

펀드별 조합		조성액	조성일	운용기간	투자기업수 및 투자액		
					계	녹색기업	IT/기타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 벤처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60 (SBA 20)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16개사	5	11
					138.7	40	98.7
녹색 2호	KU-DSC 드림제1호 그린투자조합 (SBA에 출연금으로 출자)	100 (SBA 20)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19개사	4	15
					96.4	20.5	75.9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 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SBA에 민간위탁 관리)	200 (서울시 20)	'13.9.16.	11년 (3년투자, 8년회수)	20개사	3	17
					207.1	45	162.1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 그린 투자조합 (SBA 기금으로 출자)	145 (SBA 10)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14개사	3	11
					127.4	22.5	104.9
녹색 5호	씨씨브이씨 ESG 임팩트펀드 IV (녹색3호 회수금 재출자)	200 (서울시 20)	'23.5.4.	8년 (4년투자, 4년회수)	2개사	0	2
					17	0	17
총 계		805 (市·SBA 90)	-	-	71개사	15	56
					586.6	128	458.6

○ 녹색 펀드 1호와 2호는 2011년, 2012년에 각각 160억원(SBA 출연금 20억원), 100억원(SBA 출연금 2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청산이 완료 (시 투자 회수금 각 24.5억원, 37억원)된 상태임.

3호부터 5호까지는 2013년, 2017년, 2023년에 각각 20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145억원(SBA 기금 10억원),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어 현재 3호는 청산⁴⁾, 4호는 회수 중이며, 5호는 투자(17억원)가 진행 중임.

6호는 2023년 11월 시의회에 200억원 규모의(기후대응기금 20억원) 출자 동의안이 제출된 이래, 현재 규약 확정 및 조합결성을 완료하였음.

○ 녹색 펀드는 전문성이 높은 펀드운용사(GP, General Partner)를 공모로 선정하여 투자위험에 대한 분산과 장기적·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을 수행

4) 당초 존속 기한이 2021년 9월까지이나, 해산총회에서 청산 기한을 3년 연장('24.9.15.)하였음.

하게 하며, 운용 기간은 7년에서 11년까지(3~4년 투자, 3~8년 회수)임.

2024년 기준 투자금액은 총 71개 기업에 586억 6천만원이며, 이 중 녹색기업이 15개, 128억원(22.5%)임.

운용 기간이 종료된 펀드(1~2호)의 회수금액은 402억원으로, 펀드 조성액 (260억원) 대비 수익률은 54.6%, 서울시(SBA) 분배금은 61억 7천만원 (출자액 대비 수익률 54.3%)으로 높은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지만, 청산 기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3호의 경우 운용 기간(11년)이 다른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음에도, 수익률은 38.2%로 1~2호 펀드 평균 수익률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음.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투자운용사 및 회수내역('24년 기준)〉

(단위: 억원)

펀드별 조합 [투자운용사]	조성액	총투자 금액	총회수 금액	市 투자 회수		
				투자	회수	수익
녹색 1호 서울투자 초기&녹색벤처조합 [서울투자파트너스(주)]	160	138.7	196.3	20	24.7	4.7
녹색 2호 KU-DSC 드림 제1호 그린투자조합 [DSC인베스트먼트(주)]	100	96.4	205.7	20	37	17
녹색 3호 메디치 중소·중견 녹색성장사다리 창업투자조합 [메디치인베스트먼트(주)]	200	207.1	243.9	20	24.7	4.7
녹색 4호 코메스 2017-1 스타트업그린 투자조합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145	127.4	44 (회수중)	10	3.04	-
녹색 5호 씨씨브이씨 ESG 임팩트펀드 IV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주)]	200	17	-	-	-	-
계	805	586.6	722.37	70	89.44	

3)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기후테크 펀드 조성 자금(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은 「지방재정법」, 「탄소중립 기본법」 및 「기후대응기금 조례」 등에 따른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음.

- 2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기후테크 펀드는 서울시(기후대응기금, 20억원)와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 및 민간출자자 등의 재원으로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에는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는 서울시 출자금의 100% 이상을 투자하게 됨.
- 최근 중소기업들이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 출자 계획의 취지에는 이견 없음.

다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펀드의 악용 가능성(고의 폐업 등)이나 기업 선정 형평성(동일인 중복 선정) 등 펀드 운용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운용 펀드의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3년 연속 같은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시 기후테크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2066
----------	------

제출년월일 : 2024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기 위해 '11년부터 녹색기업 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책을 펼치고 있음.
- 나.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 나. 필요성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

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필요
- 성장 가능성 있는 기후테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투자 → 성장 → 자금회수 → 재투자) 조성 필요

※ 기존 녹색기업 창업펀드 조성 및 추진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조성년도 (운용사)	존속기간 (투자/회수)	결성 금액	서울시 출자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집행액 (총 투자집행액)	서울 녹색기업 투자 수 (총 투자기업 수)
			805	90	128 (569.7)	15 (69)
1호	2011년 (서울투자파트너스)	7년 (4년/3년)	160	20 (SBA 출연금)	40 (138.7)	5 (16)
2호	2012년 (다이스케이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00	20 (SBA 출연금)	20.5 (96.4)	4 (19)
3호	2013년 (메디지인베스트먼트)	11년 (3년/8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45 (207.1)	3 (20)
4호	2017년 (코메스인베스트먼트)	8년 (4년/4년)	145	10 (SBA 기금)	22.5 (127.5)	3 (14)
5호	2023년 (클라지코인베스트먼트)	8년 (3년/5년)	200	20 (市중소기업육성기금, 3호 펀드 회수금)	- 설립 출자금 납입('23.12.1) - 기업발굴 및 투자 진행 중	
6호	-	8년 내외	200 이상	20 (市기후대응기금)	- 투자운용사 선정중('24.8월 중)	

3. 기후테크 펀드 출자 계획

가.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
 - 정부출자기관(모태펀드 등)과 민간투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미래 新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기업 집중 육성
- 市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초기 벤처·창업기업 생존

및 성장 지원

- 우수 펀드 운용사를 선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 펀드 운용 전문성이 높은 벤처캐피탈을 선발하여 수익 안정성 확보
 - 회수 자금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 및 기업성장 환경 조성

나. 출자금액 : 20억원

- 출자재원 : 기후대응기금

다. 기후테크 펀드 조성 계획

- 펀드명 : 기후테크 펀드
 - 조성목표 : 200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결성예정액의 지정출자비율), 민간출자자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 서울시 출자금의 100% 이상
- ※ 투자대상은 펀드운영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의 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

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박지미 (☎ 2133-3619)